

민주광장은 하나의 소재에 관한 두 가지 시선을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근로자의 반려동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논란 끝에 철회됐다.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갖는 반려동물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자 했으나 반려 가족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는 당연한 것

김지우(문과대 한국사20)

애완동물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반려 동물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용어의 변 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에게 반려동물 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기르는 동물' 그 이상의 존재가 됐다. 인간과 동물은 인생 을 함께 살 수 있는 가족, 혹은 그보다 더 돈독한 사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큰아버 지의 죽음과 20년을 함께한 반려동물의 죽음 중 무엇이 더 슬픈가. 현행법에는 가 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 여 필요할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 의 범위 안에 들어온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 제도는 단연코 필요하다. 특히 1 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이 위급할 때 자 신만이 돌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방

지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방관하는 것과 같다. 가족의 죽음 은 방관할 수 없다. 이들에겐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권이 보장돼야 한다.

최근의 문화속에서 반려동물이 가족과 도 같음을 알 수 있다. 반려동물 유치원, 생 일파티, 장례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외 다양한 기업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추 진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도 했 다. 2017년 10월 이탈리아에서는 반려동 물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이뤄 졌다. 로마 사피엔차 대학의 교직원이 반 려견의 수술을 위해 이틀간의 유급 휴가 를 신청했으나 거절되면서 해당 사건은 법 원으로 향했다. 이탈리아 법원은 반려견 의 수술과 병간호를 '가족 또는 개인과 관 련한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교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반려동물 돌봄 휴가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논란으로 철회된 법안을 찬성했던 것은 아니다. 해당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 10마리를 키우는경우, 법적 휴가를 최대 50일까지 사용할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입장을고려했을 때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작용도함께 생각해야 하며, 법의 시행으로일어날수 있는 다양한 상황, 문제점 등을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려동물과 사는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할수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보게되

반려동물 돌봄 휴가, 동물권 강화 유일한 방안 아냐

최원재(문과대 한국사20)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대표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 었다. 해당 법안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 동물이 질병·사고·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 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연간 최장 5일의 휴 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결국 해당 법안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다. 여론의 반대 중 가장 큰 요인 은 바로 '역차별'이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고, 반 려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또한 이 전과 비교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절반을 넘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 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에게만 최장 5 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 별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된다.

해당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현행 근로기준 법에서 이미 근로자의 자유로운 유급 휴 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 법 제60조는 15일에서 최장 25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 지 않는 근로자를 역차별하는 법안을 만 들지 않더라도,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 는 근로자들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휴가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반려동물을 위해 휴가, 혹은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이 직장과 상사에 따라 다 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는 사내 문 화 및 휴가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따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는될수없다.

그렇다고, 해당 법안의 좌초가 동물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려동물 돌봄 휴가는 결코 동 물권 강화의 유일한 방안이 아니다. 지난 해,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전까지 우리 법체계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했기에, 타인의 반려동물을 훔치거나 다치게 하여 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을 알 고 있는가? 그렇기에 동물권 강화를 위해 선 오히려 위의 민법 개정이 더욱 의미 있 다. 이처럼, 반려동물 돌봄 휴가제 외에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동물권 의 실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 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고대인의 서재

튜브가 필요할 때



〈튜브〉 손원평

〈튜브〉는 김성곤 안드레아가 자살을 결심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김성곤 안드레아가 왜 지금자살까지 결심하는 한 중년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아파트로시작한 그의 자리가 휑한 오피스텔로, 그오피스텔마저 결국한강의 한 대교로 좁혀질 때까지 그가 한 실수들이 차례로 나열되며 소설은 전개되지만, 그는 그 실수를만회하고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최선을 다한다. 노력하는 그에게 결국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되고, 그는 가지고있었던 모든 고민거리를 해결하며 성공한사업가의 궤도에 올라 부와 명예, 가족까지모두 되찾는다.

〈튜브〉가 이렇게 끝났다면 완벽한 해피 엔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제목이 꼭 〈튜브〉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 나 성곤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으며 자신 이 죽을 각오로 쌓아 왔던 모든 것을 다시 잃어버린다. 예전의 상황으로, 아니 어쩌 면 예전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 게 된 성곤은 이 소설의 초입에 나왔던 과 정을 그대로 반복한다. 빈털터리인 상태에 서 다시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성 곤을 보여주며 소설은 끝난다.

어쩌면 허무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양면성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결단력 있는 성곤의 성격이 가족에게는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으로 조명되는 것,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그의 모습이 어느 모로 보면 심한 오지랖으로 비치는 것이 그예다. 평생 어느 한쪽의 상황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드럽고 섬세한 성격이라면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의지가 강하고 성취 지향

적인 사람이라면 조금은 독단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 모순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의 좋은 면이 부각되는 상황이 인생에 계속 찾아오는 게 어떤 기회보다 귀중한 운일 수 있다.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해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게 현명할 것이다. 목소리가 커서 제 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약자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용기를 가진 이가 동일 인물일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성곤을 살린 것은 그가 가진 불굴의 의지와 실행력이었지만, 또한 그를 다시 죽인 것은 그의 퉁명스러움과 성급함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필연적인 양면성을 이해하는 시선이 곧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튜브가되는 이유다.

곽예은(문과대 국문22)

유튜브에서 '고대신문'을 검색해주세요

검색

KUTIME 〈217화〉



김정현 전문기자







고대신문을읽고 1957호(2022년 9월 19일자)

학보사의 존재 의의를 입증하는 고대신문이 되길

고대신문 1957호는 활기찬 가을축제, 이공캠 과방, 채용박람회, 세종캠 자율 배식 등 전반적으로 고려대의 이모저모를 충실히 담아냈다. 그러나 읽는 중간에 들었던 아쉬움을 몇자써 본다.

기사가 팩트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팩트만 전달하면 공허해지기 마련이다. 과도한 프레이밍은 지양하되 기사를 쓰게 된본래의 이유를 잊지 않으려 힘써야 한다. 예를 들면 '시설 이용 위해 지인 동원 못한다' 기사에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체육시설 예약 방식을 다뤘지만, 타인의 명의를도용해 예약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불러오는지에 관해서는 내용이 빠져있었다. 바뀐 시스템의 문제점이나 기자의 문제의식이 헤드라인에 드러났으면 기사를 더욱 몰입해서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한 1957호에는 이헌정 교수, 구현모 에디 터, 김승복 책거리 대표, 송태수 한국고용노동 교육원 교수, 이찬주 작가를 인터뷰한 기사들 이 실렸다. 김승복 대표, 송태수 교수, 이찬주 작가는 다른 취재 소재인 도서정가제와 노동 문제와 엮어 이를 자세히 풀어냈다는 점에서 그유기성이 돋보였다. 다만, 독자로서 한 호에 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인터뷰 기사에는 미묘한 피로감을 느꼈다. 필자도 취재와 기사 작성이 비교적 쉽다는 인터뷰 기사의 이점을 알고 있 으나, 형식에 약간의 변주를 줬다면 더 좋지 않 았을까. 이헌정 교수 기사의 경우에는 시간생 물학에 더 초점을 맞춰 학술적으로 수면 문제 를 바라보고, 전문 용어를 기자가 직접 해설해 줬다면 더욱 차별화된 기사가 됐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본교 구로병원 미래관 준공. 중 증질환 특화병원으로 도약' 기사는 소재 선 정이나 취재 측면에서 모두 아쉬웠다. 일단 해당 소재가 고려대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과 비교했을 때 지면을 많이 할애하면서까지 고 려대 구성원이 모두 알아야 하는 가치 있는 소재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옆에 배 치된 총장 선거 관련 기자 회견과 함께 고려 대 거버넌스 문제를 더 비중 있게 다뤘다면 어땠을까. 또한 구로병원 미래관 준공 기사 는 지난 6일(화) 구로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병원소식'의 글과 거의 동일하다. 보도자료 를 보도에 쓰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는 있 지만 고대신문의 애독자로서는 많은 아쉬움 이 남는다. 김재호 이사장이나 김영훈 의료원 장을 추가로 취재하거나, 2면의 단신 기사로 내보내는 것이 독자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받 아들여졌을 것이다. 늘 인력난과 마감에 시 달리는 학보사에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은 매력적인 선택지이나, 지금이 검색 몇 번 이면 고대의 소식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하는 취재가 있을 때 학보사가 더 빛날 수 있으리라.

구효주 대학신문 편집장

